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여부(O,X)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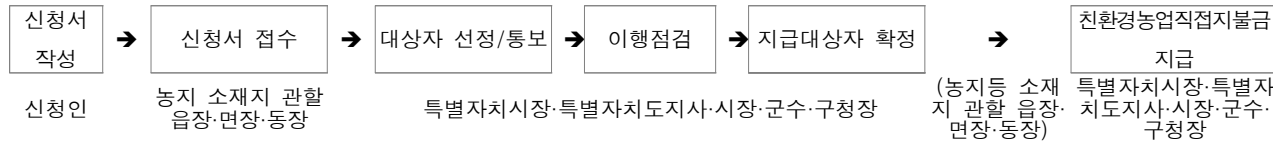
확인	읍장·면장·동장

첨부서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수료 없음

작성 방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생년월일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 품목명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전업농 등 육성·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체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등록(선정) 심사, 공개, 보조금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